

# 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2-761-4203/팩스 02-782-6659  
 담당부서: 대외협력팀 부서장: 송자은 부장 담당자: 고정은 과장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2-494호

시행일자: 2019.12.23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  
 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의견조회(김상희의원 대표발의)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14551호 관련입니다.

3. 품목허가·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·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희의원 대표발의)이 불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월 6(월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: jenko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개정안	수정안	검토의견(소속, 담당자, 연락처 명시)

붙임: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[김상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:24300)] 1부. 끝.

**(사)대한화장품협회장**